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1. 목 적 / 107
2. 배 경 / 107
3. 추진현황 / 107
4. 운 영 / 108
5. 지원내용 / 120
6. 행정사항 / 123

1. 목 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이하“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배 경

-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 “국민복지기획단”('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
- '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추가('04.1월)

3. 추진현황

- 연도별 그룹홈 현황

(단위 : 연도말,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설치수	154	213	276	332	397	416	460	489	480	476
지원예산 (인건비, 운영비 등)	424	890	2,607	3,737	4,491	5,469	5,775	6,913	7,357	8,623

4. 운 영

● 그룹홈 유형

- 남녀의 구분에 따른 분류
  - 남녀분리형/남녀혼합형(*신규신고시설은 미취학 아동까지만 혼합 가능함)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법인시설외 비영리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쉼터)은 별도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

● 지원기준

-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5~7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입소 아동이 불가피하게 감소하거나 신규 지원하는 그룹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가능
- 그룹홈 평가결과 최하등급(D) 이하 시설 지원 제외
-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 평가결과 제외시설은 신규시설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개인적 사정 등으로 휴지한 시설의 경우 기존시설에 준하여 지원여부 판단
※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후 최소 3년이상의 운영실적을 평가

- 신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그룹홈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지역협의회 의견 참조)

※ 중앙차원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로 대체가능

- 예산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3월이전 다음해 지원 필요시설 수요 제출

-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 (인건비, 운영비)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0인
전액	전액	전액	전액(발생일로부터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발생일로부터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미지원, * 지원시설중 아동퇴소 등으로 입소아동 0명 발생시설은 이후 1개월까지만 지원*

* 입소아동 0명 발생시점이 3월인 경우(발생일은 상관없음) 4월까지만 보조금 지원

- 지원 그룹홈 중 심각한 아동학대 등으로 조사중인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 판단하여 지원 일시정지 가능
- 시도내 지원시설 폐지(집행잔액제외)에 따라 불용 예산 발생시 냉·난방비 등 기존 그룹홈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 가능

● 입소 및 퇴소

-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룹홈 아동입소도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

※ 그룹홈에서 아동보호 후 관할 지자체로 통보하는 방식 불가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 대상아동의 입·퇴소절차는 시설아동의 입·퇴소절차와 동일

● 인원 및 기간

- 보호아동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입소아동은 5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은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 그룹홈을 결정하되, 그룹홈을 잘 운영하고 있거나 평가결과 우수한 그룹홈에 우선 입소시켜 최상의 보호환경을 부여하도록 노력

- 정원 책정 기준 :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 거실면적이란, 아동의 개인적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침실과 아파트형 구조의 공동생활공간과 같은 거실을 의미하며, 아동의 개인적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등은 제외함

-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연장가능 사유의 경우 p.47 참조

● 설치장소

-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다만, 아동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의 집단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아동양육상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신고시설 운영자가 그룹홈간 협력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설치기준

- 전용면적 : 82.5m² 이상의 주택형 숙사(시행규칙 별표1 : 제2호다목)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기준에 의함(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가급적 동일 층에 필요면적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의 건강, 시설안전 등 운영의 효율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다른 층도 가능

※ 변기의 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아동 5명당 1개 이상(6명 이상의 경우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 아동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초등학생 이상은 분리보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매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결정으로 분리를 연장할 수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그룹홈 시설장이 분리연장을 건의할 수 있음)

※ 남녀혼합형의 경우 남녀 각각의 침실을 갖추어야 함

- 입지조건 : 신규 설치 및 이전 그룹홈은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3호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시행규칙 별표1 : 제1호가목)

  • 단독대지내에 그룹홈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내에 그룹홈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룹홈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그룹홈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 복합상가 내에 그룹홈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그 그룹홈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그룹홈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 유의사항 :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그룹홈의 임차료 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료 충당계획 등 운영 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담보가 설정된 경우 임대인의 담보에 대한 상환 및 이자납부계획 확인 등 운영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 그룹홈의 재정운영계획 및 재원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그룹홈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대출원금)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제외

◦ 그룹홈 건물 소유시 1년이내에 구입한 경우 계약서 상 금액, 1년이 경과한 경우 공시지가 금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금융기관이나 사인에게 받은 차입원금을 부채비율로 산정

◦ 그룹홈 건물 임차시 전세금액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사인에게 받은 차입원금을 부채비율로 산정

- 그룹홈 면적, 입지조건, 재정능력, 요보호아동 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설치 및 휴업·폐업 등 신고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제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5.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종사자

- 배치기준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

- 보육사 배치기준

연령별	보육사 배치기준
0~2세	아동 2명당 1인
3~6세	아동 5명당 1인
7세이상	아동 7명당 1인

-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직종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 복지 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별표12 참조)

※ 종전 규정('12.8.4 이전)에 의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은 '18.8.31까지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됨.(2급이상 자격을 미취득하거나 2급 자격 취득 후 경력요건 3년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18.8.31부터 시설장 자격 상실)

• 보육사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별표12 참조)

※ 종전 규정('12.8.4 이전)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자격

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는 ’18.8.31일까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됨.(3급 이상 자격 미취득시 ’18.9.1부터 보육사 자격 상실)

• 종전 규정(’12.8.4 이전)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근무 중인 종사자는 해당 직종 적용 시기 유예기간에 한하여 타 아동복지시설 전직 근무 가능

(예시1) 소망 그룹홈 시설장 → 희망 그룹홈 시설장(’18.8.31까지 가능)
(예시2) 미래 그룹홈 보육사 → 희망 그룹홈 보육사(’18.8.31까지 가능)

• 임상심리상담원(심리·정서치료인력)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배치

※ 개정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상세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12 참조)

직 종	현 행	개 정	적용시기	
			기존 종사자	신규 종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8.9.1	’12.8.5
보육사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18.9.1	’12.8.5

※ 종전 규정(’12.8.4 이전)의 자격기준으로 근무중인 종사자는 경과조치 기간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 : 2002년1월1일)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일 : 종사자의 출생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 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 예시1) 시설장 생년월일이 1948.4.16 인 경우 지급상한일 : 2013. 6.30
• 예시2) 보육사 생년월일이 1953.8.13 인 경우 지급상한일 : 2013.12.31

⇒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설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참조

- 그룹홈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참조)
  - '12.8.5부터 그룹홈 안에서는 보호 아동 및 그룹홈 종사자만 거주할 수 있음
  -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12.8.5) 그룹홈 안에서 종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은 '18. 8. 6까지 그룹홈 밖으로 이주 해야 함.
- 종사자 교육 : 지자체는 반기마다 신입 종사자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 (한국아동 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신규 종사자는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종사자의 역할
  -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보호
  -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립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양육
  - 시설내 성범죄 및 학대예방 등 아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입소 아동 의무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3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 아동 대상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시 흡연예방 교육 함께 실시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학교 취학 전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1.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 생활 주변의 해로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교육 내용	초등학교 취학 전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초등학교	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1. 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2. 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 3.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4.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5.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중·고등학교	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 규정 4.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5.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대책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 시설장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적극 연계하여 아동 교육 실시

- 시설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설장은 시설보호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교육을 받은 증빙자료 및 학교 확인서 등으로 간주함)

● 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령 제53조 별표13 참조

- 유의사항

  • 아동에게 행하는 경미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방임 등이 모두 아동 학대 범주에 포함되므로 종사자는 아동 양육시 각별히 주의 요망

  • 그룹홈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제7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 **아동복지법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행정처분의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시설의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5호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바.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6호	시설 폐쇄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시행령 제58조 별표14 참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150	300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500	1,000
다.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라.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500	1,000
마.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2호	150	300
바.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3호	150	300
사.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4호	150	300

● 지역 내 드림스타트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 그룹홈 입소한 12세 미만 아동은 지역 내 드림스타트를 활용하여 보건·복지·교육·문화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 활용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그룹홈 설치·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

-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적정보호가 불가하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은 학대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기보호 보다는 일시보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이 수급권자로 선정되기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수급권자 선정이전에 피해아동을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생활, 교육 등에 안정 도모

- 그룹홈(공동생활가정)내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교육과학 기술부(교육청)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그룹홈과 근거리에 있는 학교와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비밀전학」과 「위탁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그 밖의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내용 참고

● 장부 비치

- 그룹홈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

  • 아동카드, 예·결산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관련 증빙철, 비품대장, 그룹홈 운영일지 등

※ 지자체는 필수 비치 장부 외 불필요한 서류 비치 간소화 노력 및 시설 지도

● 교대근무

- 교대 근무자 추가배치 시설은 반드시 근무표를 작성하고 교대근무 실시

  • 근무표 작성시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연차 및 유급휴가 적극 권장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그룹홈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함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 및 보고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참조

● 사회적 일자리 사업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종사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다른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중복 참여한 기간동안 지급한 인건비 환수

※ 다른 일자리 사업 등에 동일한 시간, 날짜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참여자로 간주함

- 그룹홈 종사자 채용시 취약계층 지원자 우선 채용

※ 취약계층 범주

> ① 최저생계비 150% 이하 ②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만29세이하 청년의 경우 졸업이후 6개월이상 경과자)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자(여성가장)

- 그룹홈 종사자 관리내역 및 지원금 등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입력·관리

5.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기준 : '4. 운영-지원기준 참조'

-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보호아동이 소규모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할 것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21,919천원/인.년

※ 시설장 및 보육사의 급여는 시설내 별도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사의 인건비는 법인전입금이나 외부 후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급상한선은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의 해당 직위, 해당호봉의 금액을 넘지 못함

※ 4대보험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인건비 항목에서 집행가능.

※ 시설에 교부하는 인건비 총액에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및 종사자 퇴직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인원수에 맞게 배분할 것

ex) 3명 종사시설(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1인당 인건비 : [65,757천원(21,919천원×3명)-4대보험 및 퇴직금 총액]/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1항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을 보육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 연장근로수당(시설장 및 보육사) :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을 따름

※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사의 초과운영수당은 법인전입금이나 외부 후원금으로 사용 가능

- 운영비 : 240천원/개소.월

※ 정부지원 관리운영비로 아동양육을 위한 연료비, 공공요금, 보험료가 부족할 경우 아동 수급비로 사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등 추가 지원 가능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사업)

- 지원대상 : 18세에 달하여 퇴소하는 그룹홈 아동
- 지원금액 : 시설 퇴소아동과 같음
- 지원예산 : 각 지자체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에 그룹홈 퇴소아동이 제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지급시기 :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 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 단계별 지원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 지원하되 전체기간을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원

- 지급방법 등 기타사항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기준과 같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 현재 국고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대한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 참조)

※ 공동생활가정아동은 일반 수급자로 아동의 수급비(생계비 등)는 시설 회계에 산입하지 않음

- 생활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다음과 같이 업무 처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으로 업무 처리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하여 운영함

● 후원금 관리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 후원금은 제외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운영비 :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등

  • 간접비 : 여비, 제세공과금, 기본운영비 등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 퇴직급여 및 사회보험(4대보험)

- 퇴직급여는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 가능

※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과 시설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닌 자로 간주하여 지급 불가

※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법령에 따라 종사자를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다만,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따라 각종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방노동청,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처리)

* 자세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참조

●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연계

- 공동생활가정 생활 청소년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 이를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대상 청소년 발생 시 지자체(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해당 내용을 통보

※ 3/4분기에 지자체를 통하여 상반기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연계인원 현황 조사를 실시

● 기타 운영내용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을 준수
-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아동보호양육시설로서 1인 이상의 종사자가 상주하며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양육

6. 행정사항

● 그룹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 등은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별지 제21호 서식 사용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 운영" 그룹홈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 요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한 후 신고처리

- 각 시·도는 배정된 국고보조 사업량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

●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은 그룹홈 운영에 소요되는 예·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시설장은 매월 지출 내역을 작성

- 그룹홈 사업을 하는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관련 보고시 함께 보고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지원 등을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 통합하여 운영 가능함

- 시·도(시·군·구)는 요보호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하는 그룹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 일자리 파견인력을 우선 지원함

- 시·도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1호) 참조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자는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현황을 보고함

- 각 시·도(시·군·구)는 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국고지원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고보조사업 반납 또는 불용 지자체는 추후 우리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배정시 반영 예정

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프로그램 (예시)

영역	프로그램	비고
아동·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	• 아동청소년의 발달론적 관점에서의 특성 이해 • 아동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 아동의 강점을 이해하고 과제 해결 중심 접근 • 아동의 학령에 맞는 개별적인 연차적 자립 계획 수립 - 매년 아동의 욕구를 점검하여 수정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 가족 방문 또는 전화, 문자, 편지, 카드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 노력 연1회 이상 • 가족참여 프로그램(ex. 가족캠프 등) 연1회 이상 실시 •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등 연 1회이상 실시	
학교와 관계 형성	• 학교교사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정보공유, 학교 행사에 참여 - 분기 1회 이상 아동생활 상황에 대해 교류한 기록 보유	
지역내 자원 활용	• 지역내 드림스타트를 통한 지역 복지자원 적극활용 • 지역내 관공서, 민간 자원 등 자원 연계 • 자원봉사 및 후원 기관과 관계 형성성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운영